

(재)서울디자인재단-한국전력공사간 『KEPCO e⁺Service』 시범사업에 관한 협약서

(재)서울디자인재단(이하 “DDP”라 한다)과 한국전력공사(KEPCO) 서울지역본부(이하 “한전”이라 한다)는 한전이 개발하는 고객맞춤형 부가서비스인 『KEPCO e⁺Service』의 시범사업(이하 “시범사업”라 한다.)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(목 적)

본 협약은 DDP가 한전의 시범사업에 참여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경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한전의 대고객 서비스를 향상시킴으로써 DDP와 한전 모두가 지속가능한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시범사업과 관련한 상호 협력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 (제공서비스) 한전이 시범사업으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분야는 다음과 같다.

- ① 신규 전기사용 솔루션 : 신규 전기사용 신청전 계통검토, 약관 및 법령 정보, 효율기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하는 서비스
- ② 전기요금 분석 리포팅 : 고객의 과거 전기사용실적과 사용패턴 분석을 통해 전기요금 절감요소를 발굴하거나 전기사용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이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컨설팅 서비스
- ③ 에너지 효율향상 : 고객의 에너지 효율향상을 통한 비용절감과

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에너지진단을 실시하거나 효율향상기기 및 지원제도, 에너지관리시스템(TEMS) 구축 등을 제안하는 컨설팅 서비스

- ④ 고장복구 : 고객의 전기설비 고장발생시 정전시간을 최소화하도록 상황별로 긴급 간이복구, 한전 임시공급설비 설치, 발전설비 및 복구용 자재지원
- ⑤ 긴급지원 : 고객 구내 작업시 또는 수전설비 이상발생시 긴급히 안전조치를 지원하여 안전사고 예방하는 서비스
- ⑥ 설비진단 및 점검 : 고객 수전설비의 고장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한전의 장비와 인력을 활용하여 수전설비를 진단 및 점검하는 서비스
- ⑦ 기술지원 : 수전설비의 안정적인 운영 등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최신 기술정보 제공이나 교육기회 제공하는 서비스
- ⑧ 무정전 특별관리 : 고객 중요행사시에 절대 무정전에 근접한 전기사용 환경을 제공하거나 정전 최소화를 위해 우선적인 계통운영 및 보강을 시행하는 서비스
- ⑨ 대용량고객 전용 : 154kV급 이상 당사 직거래고객에게 설비진단 및 점검, 교육 등을 제공하는 특화서비스
- ⑩ 기타 고객편의 : 요금납기일 변경, 중장비 지원 등의 편의서비스

제3조 (협력사항) DDP와 한전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상호 적극 협력한다.

- ① DDP는 한전으로부터 제공받는 부가서비스와 관련하여 한전 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의 DDP의 토지 및 건물 출입, 안전조

치, DDP 설비정보 등을 포함한 한전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한다.

- ② 한전은 DDP에게 부가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함에 있어서 부가서비스 분야, 사업규모, 제공일정 등의 세부사항을 DDP와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, DDP의 설비 피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.

제4조 (손해배상) 한전의 부가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DDP와 한전이 체결한 전기사용계약서, 전기공급약관 및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.

- ①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 한전은 DDP가 받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
- ②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으로 전기공급의 중지 또는 사용의 제한이 발생한 경우에도 경과실로 인한 경우는 5분 이상의 공급중지 또는 사용제한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손해를 배상한다.
 - 1. 5분 이상 1시간 이내, 1시간 초과 2시간 이내, 2시간 초과 의 공급 중지 또는 사용제한이 발생한 경우는 각각 전기요금의 3·5·10배를 한도로 배상한다.
 - 2. 1호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이 1개월분 요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1개월분 요금을 한도로 배상한다.

제5조 (협약기간)

- ① 본 협약서는 체결일로부터 발효되며 협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.
- ② 제1항의 기간은 협약기간 만료이전 양사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.
- ③ 본 협약서는 일방 당사자가 상대 당사자에게 30일전까지 서면으로 해지 통보하거나 상호 서면합의에 의해 협약기간 만료이전에도 종료시킬 수 있다.

제6조 (비밀유지)

- ① 양사는 본 협약서에 따른 상호협력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,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해당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제1항의 비밀유지 의무는 본 협약서가 유효기간 만료이전 해지 또는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종료된 경우에도, 본 협약서 종료 후 5년 동안 유효하다.

제7조 (법적 구속력)

- ① 제2조에 규정된 서비스의 제공과 제3조에 규정된 협력사항의 이행은 재판상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다.
- ② 본 협약서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대리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수여하거나 실시권을 허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.

- ③ DDP와 한전 사이의 전기공급계약에 대하여는 전기공급약관 및 시행세칙이 적용되며, 본 협약서의 내용과 한전의 전기공급약관 및 시행세칙이 상충되는 경우 전기공급약관 및 시행세칙이 우선한다.

제8조 (의견 불일치 해소 등)

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견차가 있거나 추가 협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적 관례에 따라 상호 호혜적인 입장에서 쌍방 간의 합의를 통해 조정한다.

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7년 8월 29일



한국전력공사
서울지역본부
본부장 김 응 태



(재)서울디자인재단
운영본부장 강 문 석
